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7 -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 2017. 12.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①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거창군 교통의 요충지로서 마리면은 평소에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청사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8. 1. ~ 12.(12개월)
- 사 업 비: 200백만원(군비)
- 사업규모: 2필지, 4,166m²
- 사업내용: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합계		2필지			4,166	49,992			
취득	토지	마리면	말흘리 245	답	2,126	25,512	2018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박**
취득	토지	마리면	말흘리 220-1	답	2,040	24,480	2018		전**

다. 추진경과

- 2017.11.6.: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계획 보고

라. 향후계획

- 2018. 5.: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협의
- 2018.12.: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지적도

가. 위치도



나. 지적도



②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1. 제안이유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일원에 시행중인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인접한 김용마을의 주거 환경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 앞 주민 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등) 설치 부지 확보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8.1. ~ 6.(6개월)
- 사 업 비: 250백만원(기금)
- 사업규모: 1,951㎡
- 사업내용: 김용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공용주차장 등) 설치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계				1,951	41,543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338-1	전	139	2,585	2018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최**
		거창읍 양평리 338-2	과수원	1,812	38,958			강**

다. 추진경과

- 2017.9.: 부지매입 예산(낙동강수계기금) 확보
- 2017.10.: 사업추진 관련 방침 결정 및 '18년도 예산 편성

라. 향후계획

- 2018.3.: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보상 협의
- 2018.5.: 부지매입후 정지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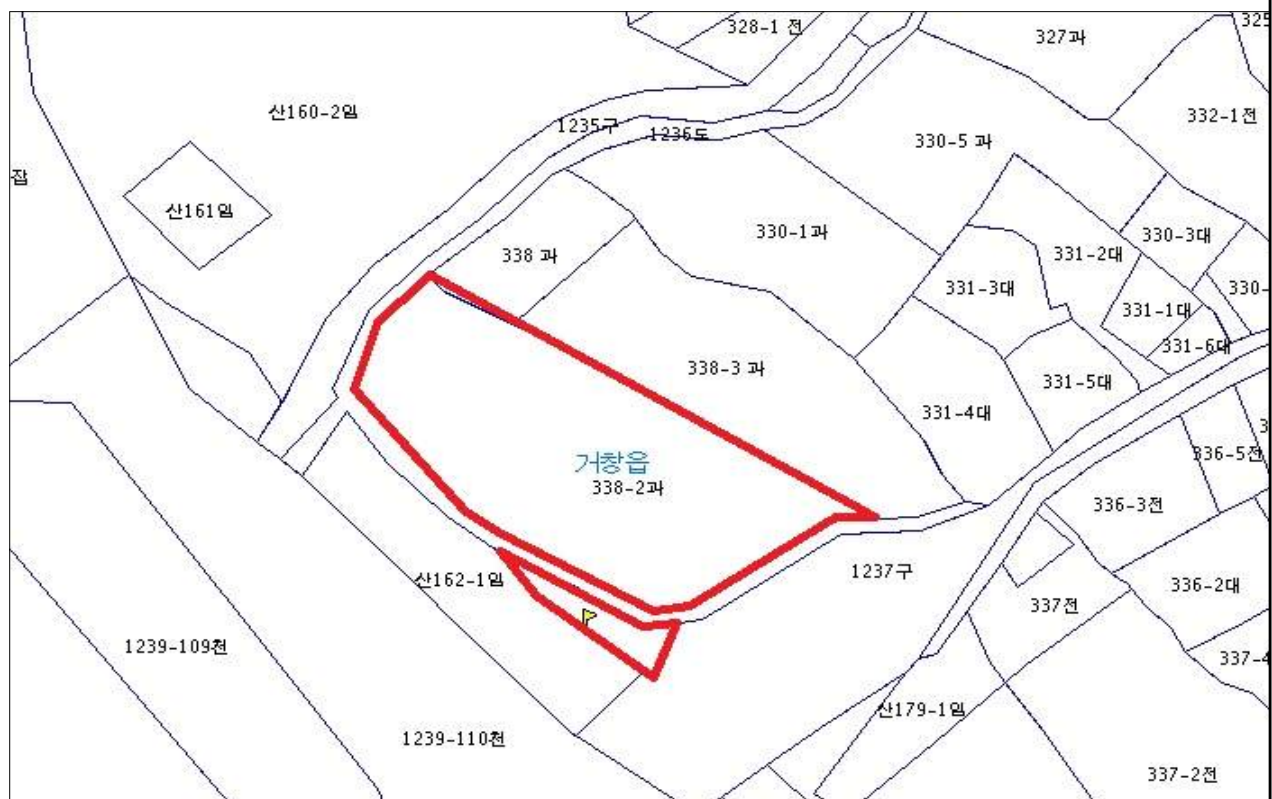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가. 위치도



나. 지적도



③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

1.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이 부족하여 연합사업 성장의 제한 및 출하 성수기 집단 개별출하로 계통 분산 출하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농산물 가격안정 등의 해결을 위한 『2018년 서북부경남 거점 APC 보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거창읍 대평리 1347, 면적 33,819㎡(토지소유자: 거창군)
- 사업기간: 2018.1. ~ 12.(12개월)
- 사업규모
 - 신 축: 집하선별포장장 2,000㎡(저온저장고 330㎡포함)
선별상자보관창고(비가림시설) 1,653㎡
 - 보 수: 선별장 지붕보수 6,324㎡
 - ※ 기존 건축면적: 11,093㎡
- 사 업 비: 2,771백만원(기금 1,385 / 도비 415.5 / 군비 970.5)
 - 집하선별포장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 2,314,300천원
 - 선별상자보관창고 비가림 시설설치: 140,500천원
 - 선별장 지붕보수: 316,200천원
- 주요기능: 서북부경남 과수 거점산지유통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사유	토 지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454,800			
취득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47	창고 용지	2,000㎡ (저온저장고 330㎡)	2,314,300 (저온저장고 314,300)	2018	집하선별포장장 및 저온저장고신축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 (선별상자보관창고)	창고 용지	1,653㎡	140,500		비가림 시설설치	거창군

다. 추진경과

- 2017.3.7.: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신청
- 2017.6.28.: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대상자확정
- 2017.8.22.: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계획서 수정
- 2017.10.3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가내시 통보

라. 향후계획

- 2018.1. ~ 3.: 토목 및 건축 설계
- 2018.4. ~ 5.: 인허가 및 도 계약심사
- 2018.6.: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18.7.: 사업 착공
- 2018.12.: 준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